

부속서 8-나

통신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 나.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가입자 또는 최종 소비자를 말한다.
 - 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1)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 라.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의 물리적 및 논리적 연결을 말한다.
 - 마. 면허란 어떠한 인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허, 허가 또는 등록을 포함하는 모든 승인을 말한다.

- 바.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가격 및 공급에 관한 참가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 1)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2)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 사.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 아.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 자.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말한다.
- 차. **공중 통신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중 통신 기반을 말한다.
- 카. **공중 통신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정해진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신, 전화, 텔레스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 타.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 및 요율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파.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 하. **통신규제기관이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그리고
- 거.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적용범위

2. 이 부속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련된 조치, 그리고
-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의무에 관련된 조치
3.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케이블 또는 방송 배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¹
4.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기업에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서비스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케이블 또는 방송 서비스 공급자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다. 사설망을 운영하는 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망을 이용하는 것을 당사국이 금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번호이동성

5. 각 당사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 외의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6.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회사와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경쟁보장장치

7.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러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상호접속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동일한 영역 내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협상할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은 원칙적으로 관련 회사 간 상업적 협상에 근거하여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9. 각 당사국은 상호접속약정 협상의 과정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공급자가 그 정보를 오직 그 정보가 공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의 비밀성을 항상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10.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나.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11.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된다.

12.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한다.

재판매

13. 각 당사국은 경쟁을 촉진하거나 최종이용자의 장기 이익에 혜택을 주기 위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어떠한 공중 통신 서비스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지를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서비스가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설비 병설

14. 각 당사국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상호접속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적용 가능한 경우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공간의 이용가능성을 포함한다) 및 요율로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15.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6.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구역 중 어떠한 구역이 제14항과 제1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비 병설이 요구되는 시장의 경쟁 상황, 그리고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구역이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망 요소 세분화

17.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제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통신 설비에 대한 접근

1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9.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18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결정할 수 있다.

규제기관

20. 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관은 모든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법적으로 구별되고 기능적으로 독립된다.

21. 규제기관은 통신 서비스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업무는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고 분명한 형태로 공개된다.

22. 규제기관의 결정과 그에 의하여 사용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한다.

허가 절차

23. 당사국이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4.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의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25.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26.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되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않는다.

보편적 서비스

27.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28.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그 자체로 반경쟁적 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의무의 운영은 또한 경쟁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각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투명성

2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당국이 법안 또는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 기관이 자국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공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0.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치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가. 서비스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나.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 그러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의 준비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라.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마. 통보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통신 분쟁의 해결

3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이 부속서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통신규제기관의 최종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3.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관련 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않는 한, 심사의 신청이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